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19가합53830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아

담당변호사 강창조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이영동

변 론 종 결 2021. 10. 14.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2015. 11. 3. D를 통하여 송금한 629,950,000원, 같은 달 12일 송금한 640,000,000원, 같은 달 20일 D를 통하여 송금한 2,000,000,000원의 증여계약 또는 임치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부친 C에 대하여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1987 판결과 시효중단을 위해 재소한 같은 법원 2019가합518082 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C은 무자력 상태에서 2015. 11. 3. 자신의 모친인 D를 통하여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629,95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2일 피고에게 64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같은 달 20일 D를 통하여 피고에게 2,0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는 피고와 C 사이의 증여 또는 임치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의 위 각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를 상대로 가액배상으로 원고 채권액 중 일부인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제척기간 경과에 관한 본안전 항변

가. 피고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소(2021. 7.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서 변경된 것)는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원래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C이 2015. 11. 20. D에게 4회에 걸쳐 2,000,000,000원을 송금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특정한 뒤, 채무자인 C과 수익자인 D 사이의 위 송금과 관련한 증여, 임치 또는 변제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는 악의의

전득자로서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이는 2019. 9.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후 원고는 2021. 7.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를 앞에서 본 것처럼 C이 2015. 11. 3.에서 같은 달 20일 사이에 D를 통하거나 혹은 직접 피고에게 송금한 행위로 특정, 변경한 뒤, 이에 따라 청구취지 역시 채무자인 C과 수익자인 피고 사이의 위 송금과 관련한 각 증여 또는 임치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청구취지의 교환적 변경은 그 실질이 기존의 소를 취하하고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기존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58431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C과 피고 사이의 각 송금에 관한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구하는 새로운 소의 제기, 즉 청구취지의 변경은 2021. 7. 15.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가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각 법률행위가 있는 날부터 모두 5년이 경과한 이후라는 것이 기록상 분명하다.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성수, 판사 백소영, 판사 임현수